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47호
2019. 7. 19.(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91호)1

공 고(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44호)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45호)6
-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656호)8
- 도시계획시설(학대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완료 공고(공고 제2019-657호)9
- 보 상 계 획 공 고(변경)(공고 제2019-660호)10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58호)13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중리동 142-7	계족로 597	2019. 7. 19.	건물신축	지역의 대표 명산인 계족산 명칭을 반영	
석봉동 180-19, -3	석봉로44번길 35-10	2019. 7. 19.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비래동	도시가스관 매설	비래동 128-20 앞	63	아스팔트	5.0	'19.7월중 (착공일로부터 20일)	19.2 (착공일로부터 20일)	1.01 (허가일로부터 10년)
2	신탄진동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139-3 앞	63	아스팔트	7.0			
3	중리동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249-1 앞	63	아스팔트	1.0			
				63	투수블럭	3.0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39호)

굴착위치

비래동 128-20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39호)

굴착위치

신탄진동 139-3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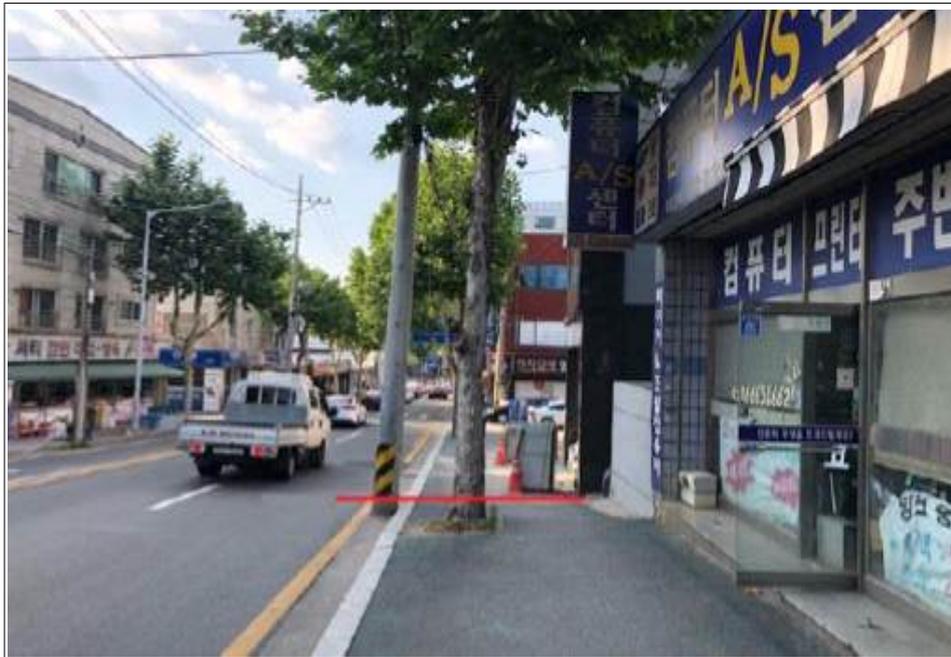
굴착위치

중리동 249-1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대덕소방서장(119재난대응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화동	소화전 배관 매설	대화동 517 옆 도로	-	아스콘	4.0	'19.7. ~'19.8. (착공일로부터 20일)	6.0 (착공일로부터 30일)	2.0 (허가일로부터 10년)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 2019-40호)

굴착위치

대화동 517번지 옆 도로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19.07.19.~2019.08.05.(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문○애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66번길 5*, *동 40*호 (가장동, 대신아트빌)	장기 미수령	1,655,890원	의료급여증 도용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처분 사전통지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2019.08.0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042-608-6383)

도시계획시설(학대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32(2019. 3. 8.)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도시계획시설(학대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1-2번지 / 학대이어린이공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82-3번지 / 봉촌어린이공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1번지 / 신탄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대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정비)
- 사업의 명칭 : 학대이·봉촌·신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공원 총 면적 : 5,173.8m²
- 사업 면적
 - 학대이어린이공원 : 1,505.8m²
 - 봉촌어린이공원 : 1,653m²
 - 신탄어린이공원 : 2,015m²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19. 6. 21.

6. 준공(검사)일 : 2019. 6. 21. ~ 6. 24.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보 상 계 획 공 고(변경)

1. 우리구 삼정동 산9-3번지선 일원 이촌마을 진입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및 회차가 불가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의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도로 비탈면 및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변경, 임야번지 등록전환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경,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준공 기간 변경)되어
3.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변경)을 아래와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대덕구 삼정동 산9-3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418m, B=10~14m
-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0. 12. 31.
- 마. 시 행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보상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산70-32번지 등 19필지

※ 토지조서 :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3.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2019년 8월경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 소정의 절차 이행 후 현금으로 시중 은행계좌에 입금 (예산사정에 따라 금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다. 보상금산정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 보상계획의 열람

가. 열람기간 : 2019. 7. 19. ~ 2019. 8. 2.

나.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 (☎042-608-6873)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토지조서의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토지의 내역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편입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예정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리 관계	
소계				20,966	4,634						
1	삼정동	25	도로	62	26	대전광역시					
2	삼정동	25-5	도로	15	15	차희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61, 1006동 1002호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북대전 농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구죽로 76(송강동)	근저당	
3	삼정동	27-1	도로	83	21	대전광역시					
4	삼정동	30-6	임야	5	5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삼정동	30-3	도로	582	11	대덕구					
6	삼정동	산 5-3	도로	1,147	115	대전광역시					
7	삼정동	산 9-7	임야	700	700	대전광역시 대덕구					
8	삼정동	산 9-3	도로	3,389	1,059	대덕구					
9	삼정동	산 10-8	임야	112	112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0	삼정동	산 10-13	임야	162	162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추가
11	삼정동	산 10-12	도로	1,442	1,442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2	삼정동	산 10-14	도로	1	1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추가
13	미호동	산 70-59	임야	302	302	대전광역시 대덕구					
14	미호동	산 70-60	임야	231	231	이충렬	대전시 중구 삼천동 179				추가
15	미호동	산 70-32	도로	932	256	대덕구					
16	삼정동	25-3	전	100	27	차선명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32				추가
17	삼정동	30-1	임야	3,926	3	경주이씨봉정중 대부공파중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08				추가
18	삼정동	산10-6	도로	1,174	100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추가
19	삼정동	산10-7	임야	6,601	46	경주이씨 삼은공파중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추가

※ 상기 편입(예상)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및 등록전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이며 지장물은 조정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개념, 조성기준, 주민참여단의 범위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 설치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으로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서 “관내 거주 주민 또는 관내에 직장·학교를 둔 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12조, 제21조).
-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지역사회 안전 증진”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로 개정함(안 제9조).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가 가능함을 명시함(안 제10조).
- 마.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 바. 여성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의2).
- 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아.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 지원에 대해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7. 19. ~ 2019. 08. 08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8. 0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전화 : 042-608-6564, FAX : 042-608-3836, E-mail : hjleehjl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현정
(전화 : 042-608-6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성정책”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 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공간계획”이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공공간, 공간환경 등에 의해 구성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당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2조제6호 중 ““서포터즈”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내에 직장·학교를 둔 자”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을“(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

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을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도시공간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 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 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 라.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
-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공간, 공원의 신규 조성 및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여성친화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초과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계획을”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여성건강증진) 구청장은 여성의 보건위생 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제안·자문·심의하기”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 여성기업인 · 전문직 여성 · 직장여성 · 전업주부 · 영유아 돌봄여성
· 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4. 그 밖에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을 갖춘 사람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24조 제목외의 부분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로 한다.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25조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않을 때”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를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의견청취)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을 “주민참여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해촉)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 중 “서포터즈는”을 “주민참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를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31조의 제목“(활동지원)”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6. “서포터즈”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주택 내부 등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내에 직장·학교를 둔 자 -----
-----.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2. (생 략)
-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신 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 -----

-----.

- 1. 2. (현행과 같음)
-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4. 가족친화적 -----

-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
-----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
--.

제13조(도시공간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공간, 공원의 신규 조성 및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여성친화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
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
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
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
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
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확
보

1.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초
과사업의 경우

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 관련 있는 사업의 경우

<삭 제>

<삭 제>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제23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지역·여성·도시 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성별영향평가 -----

-----.

제22조(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제안·자문·심의하기 -----

-----.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3. 여성기업인·전문직 여성·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24조(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직장여성 · 전업주부 · 영유아 돌봄여성 · 취약계층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4. 그 밖에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
----- 두며-----
-----.

제24조(임기) -----
----- 두 차례-----

-----.

제25조(위원의 해촉) -----

-----.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현행 제1호와 같음) -----
----- 않은 경우
3. -----

-----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30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략)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생략)

제31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주민참여단은 -----

-----.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2. (현행과 같음)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4.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현 정 042-608-656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